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5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86,145,290원, 농어촌특별세 15,97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아파트사업시행업, 부동산신축 및 분양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발행주식의 100%인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6. 21.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에게 2016. 6. 22.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한편, B은 2016. 7. 8. ○○ ○구 D 답 585㎡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310,000원에 매수하고 2016.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19. 5. 28. B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고 2019. 5. 29. C에게 양도하였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1. 11. B이 소유한 부동산의 2019사업연도 장부가액 6,605,582,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86,145,290원, 농어촌특별세 15,972,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거나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일 전인 2022. 11. 10.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9. 5. 29.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B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주주인 원고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B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16,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C은 2016. 6. 22. '원고와 사이에 2016. 6. 22.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은 매매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고, 2016. 4. 28.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C은 2019. 5. 29.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9. 5. 27.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아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다.'라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② F대학교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친분이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2016. 6. 22.경 원고가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면서 C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부탁하여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외관 때문에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임을 명확히 해 두기 위해 C으로부터 위 명의신탁확인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③ 2016. 6. 22. C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명의신탁을 가장하고 주식양도의 거래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 외에 달리 C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반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F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6. 5. 4.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여 B을 설립하였는바, 교원이라는 신분상 법인 운영 및 임원 겸직에 제한이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C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B의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에 의한 주식거래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세청은 C에게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C이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B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법무사 G이 2016. 6.~7.경 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토지 대금이 '주식회사 B(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 C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B의 경영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될 뿐이다.

⑦ 피고는 객관적으로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명의신탁약정서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대한 공증의 유무에 따라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확인서 및 동의서에 공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3

·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